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. 7. 13 선고 2015가단22313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16. 6. 15.

판결 선고2016. 7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 해운대구 C 대 359㎡ 및 D 대 218㎡ 양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및 세멘브록크조 스테트가 평가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15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'가'부분 6㎡ 및 3, 4, 17, 1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'나'부분 7㎡를 각 철거하고,
나. 부산 해운대구 C 대 35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3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'가', '나', '다'부분 23㎡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배예선

별지